

제보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

1. 감사 배경 및 목적

- 성추행 등 관련 제보 2건

※ 제보자들은 익명의 '예술가'로 전 위원장이 외부에서 인쇄물을 받아 감사 요청

2. 감사범위

- 성추행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
- 기타 부적절한 행위 여부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 : 2018. 3. 5.~3. 16. / 실지감사기간 3. 15(목)~16(금)
- 감사인원 : 이윤희 감사부장, 이기성 총 2명

4. 감사 조사 내용 및 처리 과정

- 성명 불상의 익명 제보로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제보내용에 정확한 시기 등은 없으나, 제보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함.
- 특정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자는 공연관람 이외의 성추행 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당시 사업담당자였던 직원과 문답하였으나 해당자의 성추행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음. 또한 제보에서 제기한 사업 추진, 인사이동 등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.
-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실시하였고, 새로운 증거나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감사 처분을 요구함.

5. 조치결과

- 성명 불상의 제보만으로는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,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아니나,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,
- 전 직원 대상(출장, 공연 진행 등의 사유 불문) 성희롱,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신고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 **[통보]**
- 「직원복무규정」 제4조(의무수행)에 의거하여 해당자 주의 조치 **[주의요구]**